

건강한 국민, 신뢰받는 병원, 미래를 선도하는 협회가 함께 합니다.



사단
법인

대한병원협회



수 신 전국 병원장
참 조 보험(원무)부서장
제 목 영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약제) 일부 개정안 의견조회

1. 관련 근거 :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-283호(2024.4.19.)
2. 보건복지부는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약제)」 고시 일부 개정(안)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. 동 사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, 2024.4.22.(월)까지 본회 보험국(E-mail : sjkim@kha.or.kr)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주요 내용

- (신설) [142] Tralokinumab 주사제
- (변경) [일반원칙] 골다공증 치료제, [142] Abrocitinib 경구제, [142] Baricitinib 경구제, [142] Dupilumab 주사제, [142] Upadacitinib 경구제, [322] 철분주사제, [399] Denosumab 주사제, [399] Zoledronic acid 5mg/100ml 주사제, [439] Aflibercept 주사제

붙임 : 공고 제2024-283호(개정안 및 질의응답) 각 1부.

※ 붙임자료 다운로드 : 본회 홈페이지(www.kha.or.kr) / 협회업무 / 보험국 공지사항. 끝.

대한병원협회장



사원 김승재 제2국장 정교숙 제1국장 류향수

시행:보험 제 2024-141 (2024.04.19)

우편번호 04165서울 마포구 마포동 현대빌딩13층 대한병원협회

홈페이지 : www.kha.or.kr

전화 02-705-9256 전송 02-705-9209 (대표FAX : 02-705-9209) E-mail : sjkim@kha.or.kr